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38
----------	-------

제출연월일 : 2003.11.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2003.10.22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함(안 제2조)
- 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제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 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함(안 4조)
- 다.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

-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함(안 제6조)
- 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개정함(안 제7조)
- 마.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8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함(안 제8조)
- 바.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로 하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확대함(안 제10조)
- 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 이 규정에 의한 고용자”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함(안 제12조)
- 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3조)
- 자.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 15조)
- 차.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 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개정함(안 제22조의3)
- 타. 농업기반공사에대한사업소세 감면 조항제22조의5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을“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개정함(안 제22조의5)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8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각각“부동산”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을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세 대

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의2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5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을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 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해당되는 경우에는</u>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자동차폐차영업소</u>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u>자동차폐차업소</u> 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생략)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해당되는 경우에는</u>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자동차폐차영업소</u> ----- ----. 4. (현행과 같음)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 ----- ----- -----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u> ----- ----- ----- -----.

현 행	개 정 안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u>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 3 (생략)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③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 <u>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u>----- ----- ----- -----.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 ----- ----- ----- ----- ----- ----- ----- ----- ----- -----.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5조의2(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 ----- ----- -----3년간----- -----.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제4항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취득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 목 및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 면제한다.</u>	제22조의5(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 - ----- ----- ----- <u>사업</u> <u>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